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0. 2. 7(금) 총 5매(본문3, 참고2)	
담당 부서 첨단자동차 기술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창기, 사무관 정재원, 주무관 이동우 • ☎ (044) 201-3848, 3849	
보 도 일 시	2020년 2월 1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9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,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·운영 제도 마련

-7일부터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하위법령 입법예고

-12일 하위법령안 설명회서 업계·전문가 의견 적극 청취

- 자율주행서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.
 -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공포된 「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, 자율주행차법)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(시행령 '20.2.10~'20.3.11, 시행규칙 '20.2.10~'20.3.23) 한다.
- 정부는 「자율주행차법」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·화물의 유상운송,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·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.

《 법률상에 규정된 시범운행지구 내 주요 규제특례 사항 》

관련 법령	주요 내용
여객자동차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차를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·임대 가능 ▪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노선운행 가능
화물자동차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 가능
자동차관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현행 자동차안전기준,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차량도 별도의 성능검증 절차를 통해 승인 받는 경우 운행 가능
도로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유지·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

-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,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다.
- 우선, 시범운영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,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시범운영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*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.(시행령 안 제5조)
 - *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·구축 기간(최대 2년), 서비스 운영기간(최대 3년) 등 고려
- 시범운영지구는 '시범운영지구 위원회'(이하, 위원회)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지정되며,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·과기정통부·국토교통부·경찰청 차관(급)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.(시행령 안 제13조)
- 시범운영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「여객자동차법」, 「화물자동차법」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*을 제출해야 하며,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.(시행규칙 안 제6조, 제7조)
 - * 자동차등록증, 임시운행허가증, 본 법에 따른 안전기준 특례승인서 중 하나
- 또한, 국토부는 효과적으로 시범운영지구 운영·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,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및 공개한다.(시행령 안 제14조)
- 이밖에도,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(C-ITS*), 정밀도로 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하였고,
 - * Cooperative ITS : 자율주행차량 센서로 주변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, 차량-인프라 간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센서 한계를 보완
- 법률에 따라 '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'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내용,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하였다.

□ 아울러,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2일 14시에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‘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’도 개최한다.

* 행정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완료('20. 1. 29)


○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의 하위법령에 대한 조문별 주요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·의견청취 순서로 진행되며, 현장에서 서면으로도 제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받을 예정이다.

○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법령정보/입법예고란에서 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11일(시행령), 3월 23일(시행규칙)까지 우편,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
(전화: 044-201-3848, 3849, 팩스 044-201-5585)

□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‘이번 제정안은 자율주행차법 제정 직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마련하였다.’면서,

○ ‘이번에 개최하는 설명회 및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,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영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 하겠다.’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정재원 사무관(☎ 044-201-384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

※ '19.4.30 제정 · 공포 ⇒ '20.5.1 시행

□ **입법배경**

- 자율차와 교통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하여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나, 관련 규제가 다양한 법령에 산재*하여 개별 정비로 대처 곤란

* 여객자동차법, 화물자동차법, 자동차관리법, 개인·위치정보보호법, 교통체계법 등
 ☞ 주요 선진국도 특별법 제정(美·英), 기존법 전면개정(獨·日) 등 추진 중

- 자율차 상용화·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복잡한 규제를 면제하고, 스마트인프라를 조기 구축하는 등 종합적 지원법 제정 필요

□ **주요 내용**

◆ C-ITS·정밀지도 등 인프라 집중구축·관리로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고, '시범운행지구'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·사업화 지원

- (자율차 정의 세분화)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구분(부분·완전)하고, 자율주행시스템·인프라 등 정의도 신설

- (정책추진체계 정비)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 정책 추진, 민간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기본계획(5개년) 수립, 현황조사 시행

- (자율차 운행여건 정비) 자율주행 용이성에 따라 도로를 등급화하여 '안전구간'을 지정하고, 인프라를 집중관리하여 품질 유지

* 도로시설, 스마트인프라에 대한 지속투자를 통해 '안전구간' 확대

- (시범운행지구 도입)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, 여객·화물운수사업 등에 특례를 부여하여 새로운 서비스·사업 모델 등 허용

* 지자체·경찰 등 협업, 인프라 집중구축, 보험가입 등 안전을 위한 보완책도 포함

- (관련생태계 기반 조성) 기술개발, 전문인력 양성, 국제협력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

참고2

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개요

구 분	법률	하위법령
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율주행협력시스템 · 정밀도로지도 등 정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則)자율주행협력시스템, 정밀도로지도의 세부 기능적 요소
기본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토부는 5년마다 지원정책, 인프라,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,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·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 및 시 · 도의 의견청취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승)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항목(내용) (승)기본계획의 수립, 변경 관련사항
현황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,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승)현황조사의 방법 · 대상 (則)현황조사 결과 관리 · 공표
안전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율주행 용이성에 따라 도로를 등급화하여 ‘안전구간’을 지정하고, 인프라를 집중관리하여 품질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則)안전구간 지정 기준 · 절차 (則)안전구간의 통보 · 고지방법 (則)안전구간의 확대 · 신뢰도확보
시범 운행지구 지정,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토부는 시 ·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(法 제16조)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운영관리를 위해 지자체는 조례 제정, 국토부는 협의체를 구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승)지구 지정 절차 · 기간 · 변경 · 해제와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 (승)협의체의 구성 · 운영
시범 운행지구 규제특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율주행차 여객유상운송 등 사업 허용 자율주행차 유상화물운송 허용 자동차안전기준, 부품안전기준 면제 도로관리청 외 자의 도로공사, 도로의 유지 · 관리 허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승 · 則)각종 특례에 관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허가기준
시범 운행지구 위원회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범운행지구 정책 등 심의 · 의결을 위해 국토부 소속 위원회 설치 매년 시범운행지구 운영평가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승 · 則)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의 · 의결 사항 (승)시범운행지구 운영평가 기준 · 방법 · 절차 등
보험 가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범운행지구내 연구 · 시범운행 하는 자는 책임보험 가입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승)책임보험 가입금액, 사고발생 시 보험료 지급기준
인프라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율주행협력시스템, 정밀도로지도 구축 · 운영 근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승 · 則)구축 · 운영 관련 세부사항
기술개발, 인력, 해외진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구개발사업, 전문인력양성,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근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승)지원여부, 구체적 지원방안 등 (승)각종 사업 전담 수행기관 제시